

제283회 임시회
2009. 9. 11.(금)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회운영위원회
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김화수 의원외 6인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8일/ 2009년 9월 4일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09년 9월 11일

-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 공포(2009. 4. 1.) 시행됨에 있어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,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(안 제5조)
 - 의장에게 겸직 신고(변경신고)는 서면으로 신고
 -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
-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함(안 제6조)

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충청북도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되,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 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.
- 조문의 체계나 자구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리.

4. 검토결과

-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되,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개정 조례안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